

의안번호	제 142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황규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2월 23일

충청북도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 조례안

(황규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2월 일

발 의 자 : 황규철·이양섭·김학철·김인수·
박우양·이의영·김봉희 의원(7명)

1. 제안 이유

- 2007년 12월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이 제정되어 청소년 문제 해결,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4에이치(4-H) 활동이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 민간 영역이 활성화되고 원활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2. 주요 내용

- 4에이치(4-H)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(안 제4조)
-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(안 제5조)
- 주관단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(안 제6조)
- 주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, 정산보고서와 지출 증빙서류 제출(안 제7조)
-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을 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·검사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2015년 사업예산은 [참고 자료1]에 명시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업기술원과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2015.2.11 ~ 2015.2.23(특이의견 없음)

충청북도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유·청소년(청년·학생4-H)의 4에이치(4-H) 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,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4에이치(4-H)”란 명석한 머리[Head, 智育], 충성스런 마음[Heart, 德育], 부지런한 손[Hands, 勞育] 및 건강한 몸[Health, 體育]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[4-H]을 말한다.
2. “4에이치(4-H) 활동”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
 - 가. 4에이치(4-H)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·문화활동,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
 - 나. 4에이치(4-H) 이념을 확산·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
 - 다. 국가간 4에이치(4-H)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
 - 라. 그 밖에 4에이치(4-H)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

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4에이치(4-H)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(4-H) 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(4-H) 단체를 말한다.

제4조(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에이치(4-H)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청북도 내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5조(보조금 지원) 도지사는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(이하 “주관단체”라 한다)의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계획의 제출)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7조(결산보고 등)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
2.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

제8조(지도·검사) ① 도지사는 4에이치(4-H) 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·검사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·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4에이치“란 명석한 머리[Head, 지육], 충성스런 마음[Heart, 덕육], 부지런한 손[Hands, 노육] 및 건강한 몸[Health, 체육]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[4-H]을 말한다.

2. “4에이치활동“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

가.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·문화활동, 그 밖의 교육 훈련활동

나. 4에이치 이념을 확산·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
다.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

라.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

제5조 (경비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참고 자료1]

2015년 4-H 국도비사업 지원현황

□ 한국4-H 도 본부 교육지원사업

- 사업량 : 1개소(농업기술원)
- 사업비 : 32,000천원(국비 50%, 도비 50%)
- 사업내용
 -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관련 교재 제작
 - 지역4-H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관련행사 지원

□ 4-H양성교육

- 사업량 : 1개소(농업기술원)
- 사업비 : 20,200천원(국비 50%, 도비 50%)
- 사업내용
 - 교육대상 : 영농정착 의지가 확고하고 4-H활동에 충실한 4-H회원 및 학생4-H회 육성을 위한 4-H지도교사 등
 - 교육과정 및 내용
 -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운영
 - 유통교육, 전자상거래, 농산물출하 정보검색 교육, GAP 등
 - 선진농업인 농장현장 견학 및 민간 위탁교육도 가능
 - 학교4-H 지도교사의 능력향상 및 4-H회원 지도능력 강화 등
 - 지원내역 : 강사수당, 수용비, 여비, 보상금, 임차료, 급식비

□ 청년4-H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사업

- 사업량 : 15개소(개소당 10,000천원)
- 사업비 : 150,000천원(도비 21%, 시군비 49%, 자담 30%)
- 사업내용
 - 청년4-H회원의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생력화
 - 청년4-H회원의 소득증대 및 신소득원 개발
 -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자재 및 재료 구입

[참고 자료2]

4-H 조직현황

□ 4-H 조직현황 : 8,633명(청년4-H회 272명, 학교4-H회 8,361명/161개교)

○ 청년 4-H회 : 11개시군연합회 272명

○ 학생 4-H회 : 8,361명/161개교(4-H지도교사 274명)

구 분	계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
조직수	161	39	79	43
회원수	8,361	968	4,067	3,326
(%)	100	11.6	48.6	39.8

○ 시군별 현황

(2015. 1월 현재)

구분	계	청주	충주	제천	보은	옥천	영동	증평	진천	괴산	음성	단양
계	8,633명	2,651	424	601	502	890	998	141	600	487	785	554
영농	272명	37	22	19	28	25	19	6	38	23	31	24
학생	8,361명	2,614	402	582	474	865	979	135	562	464	754	530

□ 회원 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성 별		연 령 별						학 력 별			
		남	여	9 ~ 13	14 ~ 16	17 ~ 19	20 ~ 24	25 ~ 29	30 ~ 34	초교	중교	고교	대학
영농	272	255	17	0	0	0	36	97	139	0	0	28	244
학생	8,361	3,874	4,487	968	4,067	3,326	0	0	0	968	4,067	3,326	0
계	8,633	4,129	4,504	968	4,067	3,326	36	97	139	968	4,067	3,354	244